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3일, 임호선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4.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 상정, 소위심사
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호선 의원)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에 따른 승인·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는 인·허가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인·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호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는 해당 근거법의 취지에 따라 공익 보호를 위해 규정된 것이므로, 인·허가 의제를 도입할 때에는 의제되는 인·허가의 영향력이나 법적 효과가 주된 인·허가의 경우보다 더 큰 경우인지, 또는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다중의 이해에 관계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

1)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398

이와 관련, 농지의 경우 헌법 및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됨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련 인·허가를 의제함에 있어서도 인·허가 의제가 농지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등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유사 입법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해 보임.

- 참고로, 현재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경우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 설치 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제30조)에도 산업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이 있음.²⁾

□ 다음으로, 농지에서 양식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행정적 불편을 최

2)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4. ~ 8. (생략)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승인·인가·협의·해제·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생략)
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생략)
5.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6. ~15. (생략)

소화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인·허가 의제에 포함되는 「농지법」상 승인, 허가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재 개정안은 인·허가 의제 대상으로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농지법을 보면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 제40조의 용도변경의 승인 등 농지 사용과 관련된 다른 인·허가 사항도 존재하고 있음³⁾.

특히 제35조의 농지전용 신고의 경우 법률 및 시행령 [별표1]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의 경우 농지전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지전용 신고도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농지전용과 관련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사용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모두 의제사항에 포함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으로는 개정안에 있는 제34조제1항의 농지전용 허가 및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외에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다음, 부칙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것 외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 등은 두고 있지 않은데,

시행일 전에 농지전용 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신청한 자

3) 농지 사용과 관련된 인·허가 규정은 [참고자료 1] 참조

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후 개정 규정이 당연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적용례 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농지에서 양식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외에 농지의 전용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및 체계를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부대의견

없음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농지에서 양식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외에 농지의 전용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을 추가하고,

개정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9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마련함(안 제49조제2호의2 및 부칙).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9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업 허가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 ----- ----- ----- ----- -----.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u>2의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u>	<u>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u>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3.4. (개정안과 같음)

	<u>부칙</u> <u>이 법은 공포 후 6</u> <u>개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u>부칙</u> <u>제1조(시행일) 이 법</u> <u>은 공포 후 6개월</u> <u>이 경과한 날부터</u> <u>시행한다.</u> <u>제2조(양식업 허가</u><u>에</u> <u>따른 인·허가 등의</u> <u>의제에 관한 적용</u> <u>례) 제49조제2호의</u> <u>2의 개정규정은 이</u> <u>법 시행 이후 제43</u> <u>조제1항에 따라 양</u> <u>식업의 허가를 받</u> <u>은 경우부터 적용</u> <u>한다.</u>
--	---	--

법률 제 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업 허가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u>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